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2020년도 제2차 회의록)

1. 일　　시 : 2020년도 2월 17일(수) 10:00~10:55

2. 장　　소 : 더 플라자호텔 메이플홀(4층)

3. 참석위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흥식 부위원장
국민연금공단 박정배 위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상철 위원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위원
중소기업중앙회 이태희 위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유재길 위원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황병관 위원
농협중앙회 고병기 위원
수협중앙회 정만화 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윤승한 위원
한국외식업중앙회 최규완 위원
참여연대 이찬진 위원

4. 불참위원 : 보건복지부 박능후 위원장
기획재정부 김용범 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위원
고용노동부 임서정 위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경호 위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길연 위원

	한국개발연구원	최정표 위원

5. **배 석 자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류근혁(간사)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 조우경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략부문장 박성태

6. **의결안건 :** 〔의결20-2호〕 2020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성 강화'(세부사업) 신설

7. **보고안건 :** 〔보고20-4호〕 2020년도 제1차 회의록(요약)

8. 회의경과

(회의시작 10시)

○ **간사 류근혁 :** 위원님들 다 착석을 해 주셨습니다.

2020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오늘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하게 불참을 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신 조홍식 위원님께서 대신하여 인사말씀 하시겠습니다.

○ **조홍식 부위원장 :** 금년에 어떻게 1차, 2차까지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는데요. 아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위원장께서 참석하기가 좀 힘드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대신해서 하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오늘은 좀 더 짧은 시간에 좋은 의견이 서로 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 두 번째 기금운용위원회입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의결안건은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여기에서 상근전문위원 3인을 위촉하고 전문위원회 구성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 조치입니다. 여기에서 상근전문위원 인건비 등 필요한 예산을 오늘 확정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안건이 의결된 이후에는 상근전문위원을 본격적으로 위촉을 하게 되고 또한 후속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앞으로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안건을 보고 받으시고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류근혁 :** 언론 취재진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장 밖으로 나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보고사항 : 『2020년도 제1차 회의록(요약)』

○ **조홍식 부위원장 :** 그러면 먼저 지난 제1차 회의록에 대한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혹시 회의록을 읽어보신 후에 고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 주시죠.

먼저 제 것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읽어보니까 32페이지에 한 번 봐 주시면 그때 지난번에 정당 관계 때문에 황병관 위원님이 그때 제기를 해 주신 것인데 '그러니까 그게 지난번에 국회에서 저 같으면 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서도 원장의 경우에는 당원으로는, 단순한 당원인데 그것도 10년 전에 당원해서 잊어먹고 그것을 빼버려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혼났습니다.' 했는데 이때 혼난 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연구원 원장님 중에 한 분이 이런 경험으로 혼났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혼났습니다, 앞에 '어떤 연구원 원장 한 분이 혼났습니다.'입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마치 제가 그것으로 혼난 것으로, 제가 마치 당원이었고 그런데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그런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그 부분, 그 문장만 하나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연구원 원장 한 분이 혼이 났습니다.' 그렇게, 맞죠? 저는 당원 된 적이 없습니다.

혹시 또 이런 식으로 보시고 조금 문맥이 본인의 생각하고 다른 부분들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그대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제가 대충 아까 읽어봤는데요, 문장은 저부터 보니까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여기에 적어놓은 것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다듬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1차 회의록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겠습니다.

회의록 채택은 마치고요.

나. 의결사항 : 『2020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조홍식 부위원장 :** 다음에는 의결안건 상정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의결 1건이고 보고 1건 총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결안건부터 시작하겠는데요, 「2020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간사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류근혁 :** 자료 34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의결주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상근전문위원 및 지원인력의 보수 및 근무 장소를 갖추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2020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제안이유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의 전문위원회에 상근전문위원을 둠에 따라 상근전문위원(3인) 보수, 지원인력(6인) 보수 및 근무 장소 확보를 위해서 13억 2,500만원이 필요합니다. 관련돼서 전문성 강화(세부사업)를 신설해서 필요 소요 예산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39쪽 이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이하에 보시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에 상근전문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고 관련돼서 상근전문위원 및 지원인력에 대한 보수 부분들 확정하고 근무 장소 확정하고 인건비, 기본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해 봅니다. 저희들이 관련된 예산을 기재부와 협의를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42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상근전문위원 인력은 연봉수준을 1억 5,000 정도로 드리는 게 필요하겠다고 판단을 했었고 그게 기금운용본부에서 실장 이상 급의 기본급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 정도 수준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상용직임금으로 해서, 공무원이 아닌 상용직임금으로 해

서 1억 5,000은 드린 전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이라든지 관련된 분들이 대부분 최대 1억 2,000 정도 수준으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그래서 저희들도 기재부와 협의를 하기를 1억 1,700만 원의 수준의 연봉을 책정하고 지원인력은 박사급을 임명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1인당 연간 6,500만원 정도 인건비를 반영한 겁니다. 대신 이게 뒤에 40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예산 부분들이 있는데 인건비 부분을 그렇게 조금 조정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업무추진비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려면 필요한 돈이 있을 것 같아서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내용들이 사업비 형태로 되어 있어서 기본경비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깔리는 그런 경비가 아니라 사업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상당부분 조정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일단 시작을 하고 좀 더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부분은 관련된 소요 경비, 사무실 및 사무기기 임차료 해서 3억 5,500만원 정도 반영을 했고요. 지금 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 충정로에 있는데 건물에 한 개 층의 반 정도 250평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9분이 근무하시기는 충분한 공간이고 거기에 관련된 회의실이라든지 대회의실 이런 부분들도 구비를 해서 앞으로 전문위원회 회의를 하실 때는 거기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4대 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반영했고요. 사무공간설계비 및 공사비 이런 부분들도 다 반영을 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기재부와 실무협의를 다 마친 상태이고 오늘 의결을 해 주시면 바로 저희들은 이것을 기재부에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바로 공사를 하고 채용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자료를 드렸을 텐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번에 저희들이 2순위로 해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단수로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 분들을 저희들이 상근전문위원

또는 관련된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건복지부의 민간인력 채용 기준에 보면 훈령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공무원으로 임용이 불가능한 분들은 빠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뒤 복권되지 않은 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따라서 저촉이 되는 경우는 그 분들은 위촉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절차를 진행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유로 본인이 갑자기 허락을 안 하신다든지 그 전에 있는 직장이 정리가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셨던 후순위로 저희들이 가능한 한 임용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후순위에도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다시 추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저희들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현재까지 구성된 우선 위촉 대상자를 보고를 드립니다. 상근전문위원 최종후보자는 사용자대표, 근로자대표, 지역가입자대표로 오용석, 원종현, 신왕건 씨가 될 것 같고요. 투정위도 이렇게 저희들이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외부전문가 부분도 이렇게 됐고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6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을 할까 합니다. 다음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중 투자정책전문위원회에 참석하실 분들은 이상철, 이찬진 위원님이 하실 건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노총대표에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이 참석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교체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빨리 확정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바로 진행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근로자대표 분들께 최대한 빨리 어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님이 참석하실지 빨리 확정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는 이경상, 유재길, 최규완 위원님이 참석을 해 주시기로 저희들한테 통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은 기금운용위원 중에서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참석하실 기금운용위원님이 근로자대표 쪽에서 한 분이 최종적으로 선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 **조홍식 부위원장 :** 우선 의결사항부터 보시겠는데요.

아까 여기에 상근, 당연히 전문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13억 2,500만원이죠?

○ **간사 류근혁 :** 예.

○ **조홍식 부위원장 :** 13억 2,500만원이 여러 가지 보상과 함께 여러 가지 건설비, 운영비 이런 것 등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13억 2,500만원을 방금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책정을 해 놓고, 다음에 이것은 여유자금운영의 단기자금운영에서 이것이 충당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이야기를 해 주시죠.

○ **이찬진 위원 :** 이게 공고할 때는 보상이 아마 연 얼마 이렇게 해서 공고가 나갔는데 실제로 결정할 때는 금액이 이렇게 줄어버리면 이게 문제가 혹시 있지 않은가요?

○ **간사 류근혁 :** 저희들이 공고한 행위는 없었고요. 사실은 지금 잘 보시면 저희들 그때 맨 처음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회의를 할 때 상근전문위원은 1억 5,000 정도 드렸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저희들 희망을 얘기했는데 그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된 것이고 저희들이 행정행위 형태로써 공고를 하지는 않았고 그냥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거죠. 다만, 저희들도 사실 그것은 되게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예산 편성 과정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짧은 시간 내에 상당히 큰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것인데 그게 일반회계도 아니었고 처음부터 예산에 정상적으로 정규예산에 편성된 것도 아니었고 짧은 시간 내에 편성하기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고 만약에 저희들이 시간이 많았으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당초 원안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그것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좀 더 아쉬운 것은 상근전문위원 1인당 5명의 지원인력을 붙여서 하기로 했는데 상근전문위원 한 명당 5명을 붙이면 전체 인력이 18명 정

도 되기 때문에 기금으로 별도의, 민간인력으로 그렇게 조직을 만드는 예는 없다는 게 전체적인 의견이어서 시간적인 한계도 감안을 했어야 되고 다음에 기능이 실제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도 감안을 했어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시작을 하자, 다만, 예산편성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계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보완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자고 얘기가 된 겁니다.

○ **이상철 위원 :** 저도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 전에 나왔던 얘기, 그 전에 나왔던 얘기들이 확정적인 사안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전에 나왔던 얘기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다 하더라도 추후에 지원인력도 늘려가야 될 것이고요. 상근전문위원 보수 자체도 그동안 얘기했던 것도, 또 추천하는 기관에서는 아마 본인들한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정도 할 것이라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조금씩 올려가야 할 텐데 다른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보수 수준을 책정할 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이니 하자분쟁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이니 이런 분들하고 비슷하게 해 놨는데 나중에 되면 이 사람들하고 또 같이 올라가는 식으로 가지 않겠냐는 게 제 예상인데 그렇다고 하면 보수 올리기는 또 굉장히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간사 류근혁 :**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행히 예산편성이 사업비 형태로 편성되어 있고 다른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경비라고 해서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는 운영에 필요한 돈들하고 편성비목이 다릅니다. 사업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사업비 부문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들이 꽤 있습니다. 기본경비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사업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계속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만큼 보완 할래 그러면 답변드리기 어렵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기금운용위원회 개선방안을 시작을 한 이상 잘 구성이 되려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이상철 위원 :**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재계 대표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 나중에 보면 돈에 따라서 사람의 질도 결정되는 이런 상황들이 오는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고 돈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정한 보수를 주고 이렇게 해야 우수한 인재도 확보되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그 과정에서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런 부분도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 **간사 류근혁 :** 예.

○ **이경상 위원 :** 저도 좀, 일단 보통 활동을 하려면 사람이 그냥 일하는 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비라는 게 있는데 상근전문위원들이 뭘 그냥 밥상머리에서 짜기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보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그럼 어떻게 충당이 되는 것인지.

○ **간사 류근혁 :** 사업비라는 게 주로 만나서 회의하시고 그럴 것이잖아요? 40쪽에 보시면 전체적인 내용에는 빠져 있는데 여비가 2,500만원 정도 수준으로 들어가 있고요, 아마 여비라는 것은 국내여비로 되어 있는데 주로 전주 내려가실 일들이 꽤 있을 것 같고 업무추진비로 해서 사람들 만나고 하실 때 식사하시거나 여러 가지 경비들을 충분치는 아니지만 반영을 했고요. 이 예산은,

○ **이경상 위원 :**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저희도 그렇고 뭔가 사업비라 함은 내가 다 연구를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다른 부분의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식의 사업비인 거죠. 더군다나 2명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것도 한 번 하고 싶은데 내가 전문가가 아니야, 혹은 외국의 자료를 받거나 외국의 누구한테 부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저기 용역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비라 함은 용역비를 주로 말씀드리는, 연구를 위한 용역비. 2명이 일껏 해봤자 하고 싶은 것을 다 못할 수

도 있고 역량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의미거든요.

○ **간사 류근혁 :** 일단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보건복지부랑 기금운용본부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예산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돼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사업비 형태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 정도로 현재 반영돼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운영 초기에 기금운용본부와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개입은 않습니다. 개입은 하지 않지만 관련된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복지부라든지 기금운용본부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생각이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볼 때 말씀하신 그런 연구용역이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도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유재길 위원 :** 지원인력에 6명의 인건비가 책정돼 있는데요, 지원인력 6명에 대한 채용절차나 이런 게 공개된 적이 있나요?

○ **간사 류근혁 :** 그것을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지금 상근전문위원을 먼저 위촉을 해서 채용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 안에 다 마무리할 생각이고요.

○ **유재길 위원 :** 그러니까 지원인력 6명에 대한 채용절차나 이런 부분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상근전문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냥 복지부가 공고해서 쭉 뽑는 방식보다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별지로 나눠준 것에 보면 근로자대표 투자정책전문위원회에 한국노총이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법에 의해서 지금 노동계 3명인데 한국노총이 2명 들어가고 민주노총이 1명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된 게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당연히 여기에 한국노총이 위원이 돼야 한다는, 당연히 돼야 한다는 것은 조금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양대 노총의 전반적인, 민주노총이 1노총 됐다고 해

서 주장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전문위원회가 두루 생기고 노동계에도 이 기금운용위원회를 대응하는 전반적인 논의를 양대 노총이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복지부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간사 류근혁 :** 첫 번째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인력 채용은 중간에 제가 말하다가 끊어졌는데요, 상근전문위원이 채용이 되면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전공자들이 필요한지 채용 절차는 공개모집을 할 것이고 저희들이 그것을 공고를 할 겁니다. 공고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응모들을 하실 것이고 그리고 면접이나 여러 가지 자격요건을 검토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면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좌우하겠지만 거기에 상근전문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본인들이 쓰실 사람들을 본인이 뽑는 형태가 제일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절차는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진행을 할 겁니다. 상근전문위원이 정해지면 바로 이어서 할 것이고 투자정책 지금 한 분 비어있는 것, 이 부분에서는 노동계에서 빨리 결정을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투자정책전문위원회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는 중요한 안건들이 꽤 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의 지연 때문에 그 부분 논의에 지장을 초래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 보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게 한국노총에서 와야 된다, 아니면 민주노총에서 와야 된다고 그렇게 저희들 판단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계에서 한 분이 각각 위험관리라든지 투자정책에 한 분씩 오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지장이 생길까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 **황병관 위원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비가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9명에 대한 여비가 2,500만원이라고 하면 정말 이것은 출장을 거의 갈 형편이 안 될 것 같아요. 2,500만원 같으면. 그리고 또 사무실을 아까 250평 가량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운영비 안에 보면 기타운영비가 300만원 잡혀 있어요.

이것 사무실 운영비가 포함이 된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상근 보면 대비를 했는데 사무처장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장님하고, 이 분들의 성과급은 별도로 있습니까?

○ **간사 류근혁 :** 성과급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병관 위원 :** 그리고 조금 전에 투자정책 자문위원에 대해서 우리 한국노총이 얼마 전에 집행부가 교체가 됐습니다. 교체가 안 됐으면 당연히 지난번에 우리 투자정책전문위원이 우리 노총 대표로 나오신 분이 여기에 이름이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물론 민노가 지위를 떠나서 조율은 양대 노총에서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노총에 일단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가 들어가서 노총 안의 선임절차를 거쳐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간사 류근혁 :** 황병관 위원님께서 여기에 들어오신다는 말씀이시죠?

○ **황병관 위원 :** 아닙니다. 저는 아니고 우리 사무처장이 기금운용위원으로 노총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바뀌면서 사무처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노총 안에는 사무처장이 기금운용위원으로 나온다고 하는 게 있어요.

○ **조홍식 부위원장 :** 지금 이야기되는 게 3가지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상근전문위원 보수 관계를 정부의 위원회 처장 수준에 맞췄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일하는데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거기 명분이 별로 썩, 이것 정부 그것도 아니고 기구 그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현재는 완전히 지금은 고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통과되는 겁니까?

○ **간사 류근혁 :** 예.

○ **조홍식 부위원장 :** 여하튼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선 금년에는 해 보는데 이 비용 가지고 좋은 전문, 열심히 여기에서 해서 국민의 이것을 전체적으로 더 발전되게 하기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

어요. 그래서 이 인건비 문제가 있고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딸린 여러 가지 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무실 임차료, 운영비, 여비 등등에 대한 비용도 너무 적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기재부 오셨으면 좀 이야기도 여러 분들이 하셨을 텐데 오늘 안 오셔서 그 이야기는, 그래서 이 비용은 전반적으로 적다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공동으로 여기는 것 같고요.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된 게 지원인력 6명, 이 6명이라는 근거를 처음에는 우리가 전에는 좀 더 상근전문위원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그런 게 돼야 하는데 6명으로 딱 돼 있다보니까 한 전문위원당 2명꼴이지 않습니까? 2명 가지고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일에 대한. 그런데 일단은 됐으니까 이것을 한 번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 되는 것을 종합해서 내년에 당장에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 **이찬진 위원 :** 하나만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어차피 급여 체계는 지금 현재의 공무원법상의 적용받는 그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하는 그 부분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기금운용본부의 기금운용실적과 관련해서 보상을 지금 받고 계시잖아요? 기금운용본부 분들은. 마찬가지로 이 분들도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하시든 투자정책에 일정 부분 기여하든 간에 SAA 쪽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고 TAA 쪽에 기여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상체계하고 기금운용본부하고 연동해서 인센티브를 같이 받게 하는 식으로 하면 이 분들에게도 동기부여가 조금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꾸 다른 생각하지 않는 게 기금운용위원회로써는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성과와 연계되어지는 그런 업무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 분들도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급여를 일정 부분 보완해 주는 형태의 효과는 일정 부분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어차피 현재 기금운용본부 받으시는 연봉의 별도의 인센티브가 2~30% 추가적으로 작동하고 있을 테니까 그것과 비슷하게 연결시켜 주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 **간사 류근혁 :** 처음에 성과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봤었는데 이 분들이 공무원도 아니고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 성과지표를 무엇으로 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스러웠던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일단 성과부문들은 제외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운영을 해 보면서 성과지표로 삼을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기금운용본부에서 초과수익률 나오는 것이 이 분들하고 바로 성과와 연결시키는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본경비가 아니고 사업비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검토의 여지가 있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 **최규완 위원 :**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전문위원회 보다 많이 축소된 것은 좀 아쉬움이 있고 또 지금 현재 가지 않은 길이라서 아마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점은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저희 기금운용위원회를 대신해서 전문성을 갖고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와 협업도 하고 견제할 조직으로써는 조금 축소된 느낌은 들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이 분들이 하나의 조직으로써 저는 역량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잠깐 거쳐 갈 수도 있고 기존에 했던 자신들의 직업이나 보수보다도 못하신 분들도 많아서 동기부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직의 역량을 키우고 이 분들의 그쪽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류근혁 간사님 말씀드렸지만 평가받지 않고 보상받지 않는 조직은 저는 절대 성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개인의 인터레스트와 관련이 돼 있고 또 박사급 인력도 6,500만원으로 3명이 책정돼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과연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약간의 우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분들이 봉사정신과 전문성을 가지고 왔을 때 그럼 저희 기금운용위원회나 또는 이것

을 관리하는 정부 부처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조직의 역량이나 평가보상 이런 것들을 아까 말한 대로 무조건 연계하지는 않더라도 제도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상상한 것은 이 분들이 세계적인 기금, 연금에 가서 그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관찰하고 디스커션 하고 이런 것을 상상해 봤는데 지금 여비도 2,500만원은 아마 셋이 비행기 타기도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은,

○ **이찬진 위원 :** 원 웨이 티켓으로.

○ **최규완 위원 :** 전문위원만이라도.

오늘 기재부의 담당하시는 분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정말 협상을 하셔서 저희가 이 조직 자체의 역량을 키우고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 **이상철 위원 :** 똑같은 얘기인데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까 이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성과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식으로 하실지 그것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되겠지만.

그리고 사실 이 분들한테 의무감으로, 국가에 대한 봉사로 여기 와서 일하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고요. 그러면 그에 따른 보상이 있거나 아니면 보상이 지금은 불충분하더라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더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라도 줘야 되는데 지금은 시작하는 수준에서도 미미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앞으로 내가 더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것도 안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 줘서 정말 여기에는 원래의 취지에 따라서 정말 우수하고 이런 사람들이 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전문성도 갖추고 국가에 대한 이런 봉사심이나 의무심도 갖춘 이런 것을 갖춘 이런 사람들이 와야 되는 자리인데 지금은 굉장히 불충분하다는, 사정은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노파심에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 **조홍식 부위원장 :** 정만화 위원님.

○ **정만화 위원 :** 40페이지 보면 여유자금운용이 있습니다. 항목에 '9700'

해서 이 ‘여유자금운용’은 전체 ’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전반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유자금운용액을 책정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성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앞에 항에 보면 449번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7432에 보면 ‘국민연금제도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유자금운용에서 우리가 조정할 게 아니고 7432 항목에 ‘국민연금제도운영 사업’에서 조정을 하든지 또 그게 여의치 않다면 7400에 있는 ‘국민연금운영’ 여기에서 조정을 하든지 해야지 우리가 여유자금운용도 애초 당시에 계획할 때는 목적달성을 위해서 충분한 이 정도의 자금은 있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책정했을 텐데 전문성강화를 위해서 여유자금운용서 전용을 한다는 이것은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 **간사 류근혁 :** 어떤 방식으로 편성을 하던 간에 여유자금운용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유자금운용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무엇을 쓴다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이 돈이 입·출입이 잦습니다. 잦기 때문에 그 내에서 그 부분들을 그 항목에 집어넣고 돈이 들어오면 일정부분은 또 단기간에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자금 전체적으로 운영할 때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항목이고 별도로 여기에 이 여유자금운용 부분 13억 2,000만원이 줄어들어서 현재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 **정만화 위원 :** 계정과목에 대해서 어떤 해소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여유자금운용 보면 진짜 여유자금으로 운용한다는 겁니다. 통화금융이라든지 주식매입이라든지 이런 데 쓰라고 한 것이지 여기에 운영강화를 위해서 인건비랑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데 쓰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여유자금운용을 할 수 있는 목적이 단기자금운용도 있고 채권 국채매입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조정할 게 아니고 ‘7400 국민연금운영’ 이 부분 내에서 조정을 해야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 **조흥식 부위원장 :** 사실 또 그런 측면이 또 있네요.

○ **이태희 위원 :** 오랜, 오랜 기간도 아니죠. 어쨌거나 준비를 해서 새롭게 상근전문위원 그리고 지원인력이 일을 하게 됐는데 이게 시작부터 인력이든 조직이든 예산이든 모든 게 만족스럽게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 일을 쭉 준비해 오신 복지부나 그리고 예산당국의 고민도 일정부분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게 과연 지원인력 2명으로 상근전문위원 1명 각 전문분야의 일을 제대로 해 나갈 것이냐, 이런 우려는 분명히 우리가 곱씹어봐야 될 부분인데요. 관련해서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예산내역을 보면 구체적인 사업 같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기존에 우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 관련 부서들이 있을 테니까 그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서 필요한 사업비라든지 또는 사업내용들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필요하다면 차제에 우리 위원회에도 그런 내용들이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홍식 부위원장 :** 이게 다 처음이니까 너무 이게 우리가 기대 밖의 전문성을 통해서 기금운용이 더 잘 되도록 하는데 대한, 전문가에 대한 대우 내지는 여기에 대한 지원인력 같은 것이 생각보다는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좀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 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 뭐 현재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이 길 외에 다른 데서 또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아까 사업을 쓴다든가 할 때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더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해 나가는 것을 보고 좀 더 여러 가지 아까 제도 상에 하나의 그것도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비목 가운데서 저도 꼭 여유자금운용에서만 써야 될 것인가, 이 자체는 하나의 제도가 또 바뀌는 부분인데요. 그런 차원 같으면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바들이 있는데 여하튼 좀 더 해 나가

면서 지금까지 제안된 좋은 의견들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우리 국장님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들 다, 제안된 내용들을 다 우리 위원장님께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 마침 기재부가 안 나오셨는데 이것도 다시 우리들 의견을 꼭 전달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 **윤승한 위원 :**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에 예산이 나와 있는데 윗부분에 7400에서 449번이 기금운용전문성강화 이게 오늘 핵심인데 위원님들 우려하는바 중에 보면 국제교류라든지 조사연구 이쪽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 위에 있는 '442번 국민연금 조사연구, 446번 국제교류협력사업' 이 예산들을 오늘 논의되고 있는 전문위원들이 이 예산을 활용해서 연구라든지 국제교류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 **간사 류근혁 :** 기본적으로는 안 되는데요. 계속 그렇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가능한지 한 번, 예를 들면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 조사연구 어떤 부분을 알고 싶다, 연구사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국민연금에는 국민연금연구원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별도로 연구하는 조직이. 거기에는 자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연구인력들이 꽤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이런 부분들 연구를 해 달라 하시면 그렇게 연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어디 출장 가야되는데 여기 국제협력에서 출장비를 쓰자고 하시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이고요. 왜냐하면 출장비는 국민연금 쪽에 직원들 출장비로 되어 있는 것인데 민간 신분이신 분들 출장비로 그것을 쓰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 **윤승한 위원 :**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 이게 원래 예산 편성할 때 없다보니까 재원을 여유자금운용 이쪽에서 돌려서 재원을 확보하다보니까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예비비는 없었나요?

○ **간사 류근혁 :** 예비비는 없고요. 약간 오해들을 하시는데 여유자금운용 부분에서 항상 이런 일이 생기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때 여유자금을

씁니다. 이게 저희들 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항상 그렇게 해서, 여유자금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 쪽에서 보면 약간 예비비 형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여유자금이라는 게 왔다갔다 하는 부분들이고 단기운영에 쓰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항상, 늘 그쪽에서 예산을 덜어서 씁니다.

예비비는 없습니다.

○ **윤승한 위원 :** 알겠습니다.

아마 이런 게 예산편성 할 때 없었던 비용들을 전형적으로 예비비에서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마 예비비가 없었다면 여기서 쓰는 게 부득이한 것 같고, 본 건에 대해서는 그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이찬진 위원 :** 부가적인 의견 말씀드리면, 정만화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제도운영비의 일부를 보좌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사실 정부가요. 정부가 요즘 국민연금기금에 지원해 주는 것은 거의 없는데 이게 전형적인 제도운영사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출발선상에 기재부에서도 이렇게 노심초사 하시면서 이렇게 잘 관리하고 계시는데 국고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목적사업에 딱 맞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간사 류근혁 :** 저희야 뭐 동의하죠.

○ **이찬진 위원 :**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 **정만화 위원 :** 여러 위원님들이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출범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새 제도를 만들려면 소기의 성과를 부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절차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게 우리 회의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데 어려운 점, 특히 인건비 이런 부분은 기재부라든지 이런 데도 의논할 것은 의논하고 오늘 이 회의에서 도저히 이 부분으로 책정해서는 도

저히 소기의 성과를 부양할 수 없으니까 한 번 더 의논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어떨지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 **고병기 위원 :**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가 많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첫 출발하는 것이니까 옥동자를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모든 것을 다, 요즘은 소위 말하는 애자일 시대이고 디지털 시대인데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춰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안대로 통과를 한 번 시키고 세 분이 실제로 업무를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견되면 차후에라도 기금변경은 또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더 발전적으로 셋팅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박정배 위원 :** 덧붙여서 비슷한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완전한 민간영역이 아니고 어찌됐던 공적인 영역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아마 복지부에서 당초에는 아까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억 5,000 이상으로 계속 협의를 해 왔는데 아마 기재부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줄어들게 된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한두 번 협의를 한 것이 아니고 여러 번 협의를 해서 이 최종(안)이 마련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일단은 시작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차후에 계속해서 보충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철 위원 :** 저도 이 (안)은 그대로 처리를 하고요. 다만, 오늘 나왔던 의견 인건비 현실화 다음에 성과급 이런 부분들을 부대의견, 부대의견 하면 좀 이상한데 의견을 달아서 통과를 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조홍식 부위원장 :** 여러 위원님들이 다 좋으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있는 품목 목간의 관계

에 있어서 국민연금조사연구 여기에서 우리 상근전문위원이라든가 지원인력이 갖춰야 할 좋은 것들이 나오면 여기서도 같이 사업으로 연계해서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자체에 대해서 좀 더 기재부에 대해서 복지부가 그것을 하시면 좋겠어요. 설명력이 설득이라든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우리 지금 기금운용위원회 이 민간위원들의 의견들을 좀 더 이런 강한 의견들이 있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시작은 하지만 이것을 같이 적어서, 제안된 모든 것을 적어서 같이 오늘 통과는 하되 이러한 전제로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적어서 그렇게 통과,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통과를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것을 위에 올려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가 보고죠, 보고도 아까 다 한 거죠?

○ **간사 류근혁 :** 예, 다 했습니다.

참고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자리에 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직 최종적으로 위촉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를 두고 가시고 보신 것에 대해서 보완을 유지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지금 이 분들은, 특히 상근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훈령으로 정해놓은 채용기준, 금고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지부 훈령에 따라서 이 분들 채용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차순위 또는 차순위가 없는 경우는 다시 한 번 추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감안해 주시고 하여튼 지금 현재 제가 나눠드린 형태로 위촉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반드시 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철 위원 :** 회의가 간만에 빨리 끝났는데 초치는 것 같아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기금본부에서 56개사에 대한 투자목적 변경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보도자료도 내고 하셨는데, 일반투자로. 지금 답변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이 과정에서 56개사라는 명단이 다 떠돌아서, 기금본부에서 밝힌 것은 아니지만 명단이 다 떠돌아서 이미 다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 누구누구는 56개사에 대한 게 명단이 떠돌고 있어서, 그런데 기업들 일부 전화해 보고 하니까 왜 거기에 들어갔는지도 모르는 기업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주주제안 자체가 힘들고 한데 이 시점에서 투자목적을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하고 또 어떤 근거로 해서 했는지를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해서, 지금 말씀은 안 하셔도 좋고요. 답변을 요청을 드립니다. 나중에.

○ **간사 류근혁 :** 제가 말씀드릴게요.

56개사는 명단이 떠도는 게 아니라 공시를 했습니다. 일반투자로 공시를 했고요, 해명자료를 내셨는데 지금 비공개대화를 진행 중인 기업이 있고요, 현재. 다음에 비공개대화를 할까 말까 하면서 그 회사랑 이메일이나 의견을 주고받은 데가 있어요. 그게 나머지 기업들일 것 같은데 그것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약간이라도 서로 컨텍한 게 있으면 바로 일반투자로 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새로 바뀐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 규정에 따라서 공시를 한 것이라는 겁니다.

○ **이상철 위원 :** 그러니까 이게 보도자료가 퍼지는 과정에서 방금 비공개대화 전에 메일이 왔다갔다하고 대화가 있었던 기업들도 들어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도자료에는 기업들이 비공개대화에 들어가거나 비공개 또는 공개중점관리기업에 해당된다고 지금 되어 있어서 이 56개사가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기업이 아니냐라는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박성태 전략부문장 :**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시를 할 때 공시에 대한 법령에 따른 공시를 해야 되고 관련해서 저희,

○ **황병관 위원 :** 폐회하시고 하는 게, 다들 가시는데.

○ **조홍식 부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야기되는 것은 기타 안건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전문위원회 아까 보고된 내용은 그냥 참고로 해 주시고 또 이게 완전히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니죠, 최종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고 또 한 분 빠진 부분은 한국노총에서 해 주시고, 오늘 그래도 한 시간 내로 마치게 돼서 기쁩니다.

아까 이야기된 것은 그대로 우리 의견들을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또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오늘 구성된 것은 대체로 보고를 받으셨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만날 때까지 건강히 잘 계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 10시 55분)

위 會議錄은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會議內容과 相違없이 速記法에 의하여 記錄, 作成되었음을

確認함.

2020年 2月 17日

도울速記事務所

速 記 士 姜 朱 映